

# 의안검토보고서

1. 발의 또는 제출자 : 대전광역시장
2. 건명 :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안건요지 : 별첨
4. 검토의견 : 별첨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

2009년 12월 17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임 목

#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본 조례 안은 2009년 11월 2일 대전광역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11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1. 제안이유

변화된 행정환경과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 기구의 기능을 조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청사문화공간 이용에 관한 사항을 자치행정국에서 문화체육관광국으로 조정하고 전국체육대회가 종료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국 사무에서 삭제함(안 제9조 및 제10조).
- 나. 복지여성국에 식품안전 및 세계조리사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1조).
- 다. 남부평생교육문화센터 개관에 따라 평생교육문화센터 분원으로 기구를 설치함(안 제45조).

## 3.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 안은

행정력 강화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청사문화공간 이용에 관한 사무를 자치행정국에서 문화체육관광국으로 이관하고 복지여성국 보건위생과의 식품안전에 관한 업무를 분리하여 식품안전과를 신설하며, 세계조리사대회 지원을 위한 세계조리사대회 지원단 신설과 금년 11월 준공된 대전광역시 남부 평생교육문화센터를 조례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으나,

청사문화공간 이용 사무의 경우 지난 7월 자치행정국 내에 신설되어 5개월 만에 문화체육관광국으로 이관되는 사안으로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앞으로는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